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25

발의연월일 : 2024. 11. 22.

발 의 자:전진숙·김선민·이기헌

김원이 · 김남희 · 김정호

권칠승 • 윤후덕 • 이용우

허종식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

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 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의 제목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을 "(가향물질 첨가 및표시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조자등은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 ② 제조자등은 담배에 제1항 후단에 따른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 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 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향물질 함유 및 첨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 제9조의3(가향물질 첨가 및 표시 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제한) ① 제조자등은 연초 외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 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 (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제조자등은 담배에 제1항 후단에 따른 가향물질을 포함 하는 경우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31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 4. ~ 6.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 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자

4. (생략)

② ~ ⑤ (생 략)

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
매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 4.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